

##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 일시중단 및 2023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기간 연장

농식품부는 렘피스킨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하여 12월 말까지 집합교육을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3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기간이 2024년 2월 29일까지 연장되었으니 반드시 기간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 [www.farmedu.kr](http://www.farmedu.kr)

◎ 집합교육 중단기간 및 적용지역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국

\* 온라인 교육은 현행대로 실시

◎ 교육기간 연장 : 2024년 2월 29일까지

\* 적용대상 : 20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 2023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간 연장 Q&A

Q1.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대상자 누구인가요?

◎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중 '23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Q2. 미 수료자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온라인교육 : 컴퓨터·핸드폰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http://www.farmedu.kr))에 접속·가입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수강이 가능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학습상담 지원센터 : ☎ 1833-4265)

- ◎ 집합교육 : 2024년 1월 1일 ~ 2024년 2월 말일 중 개최되는 집합교육에 참석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Q3. 미수료자가 '23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24년 1~2월 중 이수할 경우, '24년 보수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 '23년에 수료해야하는 보수교육 허용기간을 '24년 2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24년 보수교육은 축산법에 따라 정해진 보수교육기간 내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Q4. '23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미수료자는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 '24년 2월말일까지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 미이수자 과태료 : (허가) 100만원, 200, 400, (등록) 50, 100, 200

**Q5. 보수교육 의무 면제 등**

- ◎ 법인 : 법인 대표자 또는 지정된 법인소속 관리자가 교육수로 가능합니다.
- ◎ 허가·등록 농장이 다수인 경우 : 대표자가 1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축종 및 허가·등록에 관계없이 1회 교육을 받으면 되나, 허가과 등록을 함께 받은 자는 허가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휴업자 : 허가·등록시스템(세울 행정전산망)에 휴업으로 신고된 경우 휴업기간 동안은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 교육 면제)